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35호, 2023. 12. 31.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중 코코넛 주스의 협정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5.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을“(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3호”를 “법 제1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이”를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의”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보정이자)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당한 방법”이란을 “부정한 행위”란으로, “것을”을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것”을 각각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46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 중 1516109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16109000	기타				
	-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	0.0			
	- 기타		4.0	4.0	4.0

별표 4의 20098910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0989103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0.0			
------------	----------------------	-----	--	--	--

별표 10의 0713329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713329000	기타	0 (619메트릭 톤 이하)	0 (643메트릭 톤 이하)	0 (666메트릭 톤 이하)	0 (690메트릭 톤 이하)	0 (714메트릭 톤 이하)	0.0	0.0	0.0	0.0	0.0	주6
		217 (619메트릭 톤 초과)	199 (643메트릭 톤 초과)	180 (666메트릭 톤 초과)	162 (690메트릭 톤 초과)	143 (714메트릭 톤 초과)						

별표 17의7의 6307904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3079040	안면마스크																		
----------	-------	--	--	--	--	--	--	--	--	--	--	--	--	--	--	--	--	--	--

별표 25 제2호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2항제2호”를 “법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과 별표 10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법 제1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u>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u></p> <p>② 관세청장은 <u>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u> ----- --</p> <p>② ----- <u>법 제13조제1항에 따른</u> ----- ----- -----.</p> <p>제46조의2(보정이자) ① <u>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u></p> <p>② <u>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1. <u>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u></p>

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제1 제47조(가산세) ① -----

항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과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② (생략)

③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계약상대

----- 부정한 행위”란 -----

----- 행위를 -----.

1. -----

----- 행위

2. -----

----- 행위

3. -----
----- 위한 부정한 행위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제46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
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
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
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
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
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
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④ · ⑤ (생략)

<삭 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1